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천연기념물	유형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참고 사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해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천연기념물은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